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(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) 관련 사항을 상향 입법함(안 제52조제1항).
-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2조제3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